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2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안*영(고객번호 112579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81,74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7. 05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17번길 47-3(개금3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4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박*학(고객번호 107859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59,28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9. 09월~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182번길 23-7(가야3동)

2023. 09. 08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4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덕(고객번호 398929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71,66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11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208번나길 38(가야3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4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전*도(고객번호 118670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69,16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1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438-6(범천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4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안*임(고객번호 118278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266,83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6. 06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400(범천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4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인*미(고객번호 398084-12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686,61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9. 05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208번나길 10(가야3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4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곤(고객번호 108483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51,77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4. 07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208번길 28-14(가야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4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진*순(고객번호 107345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17,92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6. 07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208번길 75-5(가야3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4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이*도(고객번호 107507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81,93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11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학로 45-10(가야3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4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관(고객번호 118968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81,51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0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453-1(범천4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4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일(고객번호 118256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43,26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3. 1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402번길 20-8(범천4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장*익(고객번호 104570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722,7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9. 05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322(가야1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박*연 (고객번호 105101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08,07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5. 11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학로25번길15-7(가야1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문*희(고객번호 117321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13,62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5. 1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72번길 127-12(범천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최*이 (고객번호 117074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79,04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04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14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박*숙(고객번호 117048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79,07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04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22번길6-12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강*구(고객번호 117052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87,45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7. 0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22번길6-16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차*순(고객번호 117042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89,4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0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10-2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이*자(고객번호 116024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85,2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7. 1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60번길6-19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진*미(고객번호 115956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40,18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4. 08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60번나길17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박*식(고객번호 115927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08,68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6. 04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60번길44-4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정*선(고객번호 116529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76,74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10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망양로945번길6-9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변*선(고객번호 116955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99,40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08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516번길28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주*배(고객번호 116932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18,56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5. 08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0번가길 17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영(고객번호 116878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81,51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0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518번길8-8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환(고객번호 116726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,486,0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0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509번길19-10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6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곤(고객번호 116042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71,23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10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만리산로 56(범천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1*동 51호 (고객번호 112089-934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46,75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06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61번길 29(개금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*동 17호(고객번호 111054-931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75,23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06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61번길 29(개금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5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박*길(고객번호 114146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231,10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4. 08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71번길 78-1(범천1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5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장*학(고객번호 114199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76,63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9. 10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17번길21(범천1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석(고객번호 095160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2,053,32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0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30(전포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4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박*영(고객번호 077114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,512,12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9. 03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46-5(부전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서*석(고객번호 095257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65,43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8. 1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76번길 48-11(전포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이*국(고객번호 095161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39,36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12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30(전포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허*술(고객번호 095163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270,96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9. 1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30(전포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**식당(고객번호 095165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54,34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9. 12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30(전포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**곰장어(고객번호 095166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64,22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9. 04월 ~ 2023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30(전포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국민주택 a**호(고객번호 111277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59,28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9. 09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48번길 25(개금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61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09. 08. ~ 2023. 09. 23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박*약(고객번호 111330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42,02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11월 ~ 2023. 07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48번길 25(개금2동)

2023. 09. 08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